

수도권매립지조합회의 위원선출안심사보고서

1991. 11. 28
문교사회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1991. 11. 15

나. 제안자 : 인천직할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1. 11. 19

라. 상정일자 : 1991. 11. 25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환경녹지국장 서효원)

가. 제안이유

- 제3회 인천직할시의회(임시회) 제3차 본회의에서 수도권 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(안)이 의결됨으로써
- 동조합조약 제6조(조합회의의 구성)에 의거 조합회의위원 7인중 4인(인천시 1, 서울시 2, 경기도 1)은 시·도의회에서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어 동조합회의 위원을 선출코자 제안함.

나. 주요골자

- 조합구성원중 의원 1인을 선출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- 관련근거
 -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 규약 제6조
- 검토의견
 - 제3회 인천직할시의회(임시회) 제3차 본회의에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규약이 의결되었으며
 - 동규약 제6조에 의거 조합회의를 구성코자 위원 1인을 선출

4. 질문 및 답변요지

- 질의 (이명복 의원)

- 강승훈의원 추천 동의 제의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

○ 이명복의원 동의 제안

심상길, 이희구, 강승훈, 김순배, 이명복, 이윤환, 한영환

나. 반 대

○ 없 음

6. 심사결과

○ 강승훈의원 선출